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54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 남인순・김남희・조계원

이병진 • 황정아 • 민병덕

진선미 • 박희승 • 전진숙

김원이 의원(10인)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고, 그 기간 동안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이 그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날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월의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하고,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 나. 국가는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로 하고, 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이하 이 조에서 "해당연령"이라 한다)가 된 사람이 그 해당연령이 된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우에는 그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 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 2.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것
- 3. 제9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없을 것
- 4. 30세가 된 사람의 경우 종전에 이 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

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② 국가는 해당연령이 된 사람에 대하여 그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 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설>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최호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이하 이 조에서 "해당연령"이라 한다)가 된 사람이 그 해당연령이 된 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
하는 달부터 3개월 간 지역가 입자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 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 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 만, 그 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것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것

- 4. 30세가 된 사람의 경우 종전에 이 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것
- ② 국가는 해당연령이 된 사람 에 대하여 그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을 대 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 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 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 금보험료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u>제100조의5</u>(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생 략) <u>제100조의6</u>(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현행 제100조의5와 같 음)